

의안번호	2219594
의 퇴 인	박지혜 의원
회 답 일	2026. 9. 1.
추계번호	26A317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0조제1항제3호의4 및 제4호(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제 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이하 “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음. 이 경우 주차장, 비가리개 및 전기·가스·화재·풍수해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이하 “안전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개량·보수하는 사업은 시장등별로 제2항에 따른 사업신청을 위한 동의비율을 달성한 정도, 점포 및 상인의 수, 안전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두어 지원할 수 있음(제1항) － 1. 상업시설: 영업에 직접 제공되는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 － 2. 공동시설: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비가리개, 창고, 상인교육시설,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개량·보수 및 관광(테마)거리 등의 조성 － 3. 고객편의시설: 고객이 주로 이용하는 주차장, 진입로, 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등의 설치·확장 및 수리 등 － 3의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편의시설의 설치·확장 및 보수 등 － 3의3. 홍보시설: 고객을 대상으로 홍보용으로 설치하는 게시시설, 전광판, 방송시설 등의 설치·개량·보수 － 3의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해당하는 시설에 부설하는 에너지자립설비(냉난방 설비,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의3제3항제3호에 따른 자가소비용 태양광발전 설비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개량·보수 － 4. 공설시장에 대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부터 제3호의4까지에 해당하는 시설의 신축 또는 개축 등	재량규정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등 근거 규정
1	안 제20조제1항제3호의4 및 제4호(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이하 “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함)에 상업시설 등에 부설하는 에너지자립설비의 설치·개량·보수 등을 포함시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개정안에 따른 “에너지자립설비”는 냉난방 설비,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의3제3항제3호에 따른 자가소비용 태양광발전설비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말함
- 개정안의 시행으로 에너지자립설비의 설치·개량·보수 등이 시설현대화사업에 포함됨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보조 대상이 확대되어 이와 관련된 기존 사업의 확대 또는 신규 사업의 추진으로 재정지출이 증가할 수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시설현대화사업은 2020년부터 광역 지방정부 사업으로 이관되었으며, 광역 지방정부별로 세부내용이 상이함
 - ※ [참고자료] 시설현대화사업 개요 및 광역 지방정부별 ‘25년 지원실적
 - 한편,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통시장에 태양광 설치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재생에너지보급지원’¹⁾

1) 코드: 전력산업기반기금, 5202-303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인 '건물지원' 사업 중 전통시장 태양광 지원에 19억 8,000 만원을 편성함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추진될 에너지자립설비의 설치·개량·보수 등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에 대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수준 및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이에 대해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손희정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손희정	02-6788-3750	hjson87@assembly.go.kr

[참고자료] 시설현대화사업 개요 및 광역 지방정부별 '25년 지원실적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1. 시설현대화사업 개요

□ 사업개요 ※ 광역 지방정부 사업으로 지방정부별 세부내용 상이

- **(사업목적)** 전통시장, 상점가 등의 고객·매출증대 및 상권활성화를 위해 노후화된 시설개선, 기반시설 설치 지원
-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 **(추진방법)** 광역 지방정부에서 사업 추진*

* 중기부 소관 사업이었으나, '20년부터 지방정부로 이관 / 국비 지원 無

□ 지원내용

- 아케이드, 고객지원센터, 공동판매장, 공동배달센터, 진입도로, 냉난방시설 등 공동이용시설 및 전기·가스·소방 관련 안전시설물 등

2. 광역 지방정부별 '25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실적

[표 1] 광역 지방정부별 '25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실적

광역	지원 예산 (억원)	전체 시장(곳) (A)	지원 시장(곳) (B)	전체 대비 지원비율(%) (B/A)
서울	120	194	56	28.9
부산	80	158	47	29.7
대구	22	109	26	23.9
인천	41	44	32	72.7
광주	11	25	12	48.0
대전	45	27	17	63.0
울산	16	41	19	46.3
경기	60	148	11	7.4
강원	38	62	23	37.1
충남	21	59	11	18.6
충북	20	57	19	33.3

광역시	지원 예산 (억원)	전체 시장(곳) (A)	지원 시장(곳) (B)	전체 대비 지원비율(%) (B/A)
전북	31	57	9	15.8
전남	59	99	12	12.1
경북	73	139	11	7.9
경남	63	157	37	23.6
세종	0.6	4	4	100.0
제주	88	23	21	91.3
합계	789	1,403	367	26.1

자료: 중소벤처기업부